

제259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

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한부모가족 지원에
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검 토 보 고 서

【최인순 의원 대표발의】



2025. 3. 24.

사 회 건 설 위 원 회
전 문 위 원

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 검 토 보 고 서

1. 경 과

의안 제498호로 2025년 3월 10일 최인순 의원 외 4명으로부터 발의되어 2025년 3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.

2. 제안이유

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내 한부모가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(안 제5조)
- 나.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(안 제6조)
- 다.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(안 제9조)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: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
- 나. 예산조치: 해당 없음
- 다. 입법예고(2025.03.11.~2025.03.18.) 결과: 의견 없음

5. 검토의견

○ 본 일부개정조례안은

- 상위법인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의 규정 중 본 조례에 미반영된 사항을 명시하고, 지원사업을 확대하는 등 한부모가족의 복지를 증진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,

○ 주요 내용으로

- 안 제5조(지원계획 수립)제1항은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1)제2조제2항에 근거하여 지원계획 수립·시행에 관한 사항을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개정하고, 제2항은 같은 법 2) 제17조에 근거하여 규정함
- 안 제6조(지원사업)는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립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원사업을 확대함
- 안 제9조(협력체계 구축)은 한부모가족 지원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설함.

○ 검토결과

- 본 조례는 상위법인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2조(국가 등의 책임)에 근거하여 한부모가족의 복리를 증진하고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고자 제정(2017. 6. 1.)되었음.

1) 제2조(국가 등의 책임)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의 권익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2) 제17조(가족지원서비스)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에게 다음 각 호의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- 현재 영등포구는 한부모가족지원에 관한 구비 사업은 없으며, 국·시비 사업으로만 추진 중임.

영등포구 한부모가족 현황

□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

구 분	합계	모자	부자	조손	청소년(모자)	청소년(부자)
가구 수	504	392	106	1	4	1
수급자 수	1,168	908	246	4	8	2

□ 한부모가족 지원사업

구 분	사업명	지원대상	지원내용	재원	
한 부 모	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(모부자, 조손 추가양육비지원)	만18세 미만 아동	1인당 월 23만원 (추가양육비지원: 5~10만원)	국비50:시비50	
	한부모가족자녀 교통비 및 학비 지원	. 교통비 :13세 이상 18세 이하 . 학비 : 고등학교 재학생	. 교통비 : 분기별 108,000원 . 학비 : 입학금 . 학비 지원	. 교통비 :시비 100 . 학비 :시비50:교육청:50	
	한부모가족 명절위문금 지원	한부모 가족	연 2회 40,000원씩 지원	사회복지공동모금회	
	청 소 년	청소년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	만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 자녀	. 0 ~ 1세: 40만원 . 2세 이상: 37만원 (한부모양육비 지원 시 차액 지원)	국비50:시비50
		서울형청소년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	만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 자녀	1인당 월 20만원	시비 100
	시 설 한 부 모	아이돌봄 서비스 지원	만 12세이하 아동 양육 한부모가족 중 복지시설 입소자	영아돌봄, 가사활동, 질병아동 재가 돌봄서비스 등 지원	국비30:시비70
입소자 상담의료 지원		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자	상담 및 치료 지원, 의료비 및 (통원 시) 교통 실비 연 35만원 지원	국비50:시비50	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2조제2항 (시책 수립·시행 책무)이 재량에서 기속으로 개정(2018.01.16.)된 사항을 반영하여 ‘영등포구 한부모 가족지원계획 수립’을 강행규정으로 개정하고,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10조 및 제17조에 근거하여 지원대상자조사 및 가족지원서비스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함으로써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, 조례 개정의 취지가 타당하며, 상위법령 범위에서 적절히 규정한 것으로 판단됨.

참고 자료

1 한부모가족지원법

제2조(국가 등의 책임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의 복지를 증진할 책임을 진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의 권익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예방하고, 사회구성원이 한부모가족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④ 교육부장관과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은 「유아교육법」 제2조제2호의 유치원,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 및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의 학교에서 한부모가족에 대한 이해를 돕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자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⑥ 모든 국민은 한부모가족의 복지 증진에 협력하여야 한다.

제10조(지원대상자의 조사 등) ①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은 매년 1회 이상 관할구역 지원대상자의 가족상황, 생활실태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.

②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를 대장(臺帳)으로 작성·비치하여야 한다. 다만,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활용할 때에는 전자적으로 작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 및 대장의 작성·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.

제17조(가족지원서비스)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에게 다음 각 호의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1. 아동의 양육 및 교육 서비스
2. 장애인, 노인, 만성질환자 등의 부양 서비스
3. 취사, 청소, 세탁 등 가사 서비스
4. 교육·상담 등 가족 관계 증진 서비스
5. 인지청구 및 자녀양육비 청구, 출생확인신청 등을 위한 법률상담, 소송대리 등 법률구조서비스
- 5의2. 출생확인신청을 위한 유전자검사비용 지원
6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가족지원서비스

2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

제17조의2(가족지원서비스 등) 법 제17조제6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가족지원서비스”란 한부모가족에 대한 상담·심리치료를 말한다.